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규정

제 정 : 2023. 5. 4.

개 정 : 2025. 8.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대학교(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포함,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및 그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익침해행위”란 대학 또는 교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익신고”란 구성원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대학에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 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신고의무) ① 구성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타인의 음해성 및 고의적인 명예실추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 제5조(책무)** ① 대학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부서 및 조사부서) 공익신고 접수와 신고자 보호 담당은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이하 “확인부서”라 한다)로 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사부서(이하 “조사부서”라 한다)로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익신고서(별지 제1호, 제2호)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확인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 방법) ① 확인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 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확인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확인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소) ① 확인부서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취소로 접수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및 이송 등) ① 확인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중지,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부서를 조사부서로 지정한 후 조사를 이첩·송부할 수 있다.
- ④ 조사부서는 제3항의 이첩·송부된 공익신고를 처리 후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 및 확인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공익신고의 송부는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후 송부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10. 기타 공익신고의 조사가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대학 내 구성원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대학 내 구성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 담당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구성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대학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은 구성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확인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따르며, 이 외에 공익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7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학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조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